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234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강귀석, 최미라

피 고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강수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3. 3.
7. 접수 제51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LPG 가스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LPG 가스 도소매 및 가스기기 수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의 딸 G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G는 2016. 1. 11.경부터 2023. 1. 25.경까지 사이에 경리이사에게 직원들 급여를 청구하면서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임의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자금 합계 761,168,000원을 횡령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인천지방법원 2024고합85 사건)되어 2024. 7. 25.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노2389)가 기각되어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22. 11.경부터 피고의 자금관리에 의심을 품게 되어 G에게 관리하는 통장 거래내역의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G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3. 1. 27.경 직접 금융기관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이상을 확인하였고, G는 2023. 1. 30.경 원고들에게 자신의 횡령사실을 자인하였다.

라. 그런데 G는 2020. 9. 28. 같은 달 9일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3. 7.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 및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51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남편과 공동 명의로 보유하던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는 2023. 4. 25. 매매를 원인으로 2023. 5. 3. 중국인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G는 위와 같이 처분한 부동산들 외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등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G에 대하여 위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G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일반채권자의 공동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G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노후에 집을 짓고 살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G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로서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피고가 부담한 매매대금 18,000,000원에 해당하는 18/65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 L이 G에게 송금한

18,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65,000, 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부담하고, 잔금 중 35,000,000원을 G 명의로 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사실 및 위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G가 지급한 사실, G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인 M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이고 G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G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8/65지분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위 돈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G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별지